



제 430 회 국 회 (임 시 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92호)

2025.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14.
3. 회 부 일: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레슨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가로 재판매되거나, 대량 확보 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의 암표화가 확산되면서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다계정·대리구매 등을 활용하는 신종 거래방식은 현행 규제만으로는 적발 및 제재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금융기관·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적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권 거래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체육서비스 시장 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3(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u> <u>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u> <u>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u>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경범죄 처벌법」 1)에 따르면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한

-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원

암표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3.

8.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권등을 부정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2024. 2. 9. 시행)²⁾.

-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고, 부정판매가 심각해짐에 따라 부정판매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암표판매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그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행위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과징금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8. 8.]

제3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형벌과 달리 행정적 경제제재 수단으로 이중처벌 문제 없이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1월 28일,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입장권등 판매업자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바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부과 측면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과세정보의 제공근거를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과징금 미납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유사 입법례로 매크로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판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³⁾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최근 국회 문

3) 의안번호 제2204615호,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

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①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 사례의 빈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5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비 개정안으로 제안되지 않은 신고기관, 포상금 규정 등은 부정판매 관련 언론보도, 민원 등 사례가 거의 없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추후 기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또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조직적이고 영업적인 암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나, 개인 간 정상적인 생활거래까지 일률적으로 불법화하여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인바, 매크로사용, 영업적 재판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22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현황

☐ 국민체육진흥법

의원명(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이춘석 (민/국토) 2202942	○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 금지(온·오프라인), 이득액별 처벌기준 세분화	‘24.8.19.
강유정 (민/문체) 2203804	○ 압표 방지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	‘24.9.9.
조계원 (민/문체) 2204600	○ 처벌 강화(3년, 3천만원), 몰수추징,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 금지(온·오프라인)	‘24.10.7.
박수영 (국/기재) 2204673	○ 기준 가격(구입가격→정가), 압표 신고기관 지정,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 금지, 처벌 강화, 몰수추징	‘24.10.11.
민형배 (국/문체) 2204785	○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 금지(온·오프라인), 압표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부령에 위임	‘24.10.18.
김준혁 (민/교육) 2205305	○ 금지유형 세분화(방해, 구매, 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몰수추징, 이득액별 처벌기준 세분화	‘24.11.6.
조인철 (민/과기) 2206353	○ 가중처벌,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 금지, 처벌 강화, 몰수추징	‘24.12.10.
김선교 (국/농림) 2212777	○ 처벌 강화(3년, 3천만원), 몰수추징, 매크로 무관 모든 온라인 부정판매 금지	‘25.9.8.
장철민 (민/산자) 2213783	○ 기준 가격(구입가격→정가),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 금지(온·오프라인), 부정판매 신고자 포상금, 몰수추징	‘25.10.29.
조승래 (민/기재) 2213924	○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 금지(온·오프라인), 과징금, 상습, 영업 판단기준 구체화, 부정판매 알선·방조를 금지	‘25.11.5.
임오경 (민/문체) 2214275	○ 입장권 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신고기관 지정, 신고포상금 지급, 과징금 부과 등	‘25.11.14.
정연욱 (민/문체) 2214299	○ 입장권 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신고기관 지정, 신고포상금 지급, 과징금 부과 등	‘25.11.14.
김재원 (민/문체) 2214294	○ 입장권등 부정판매 과징금 부과	‘25.11.14.

☐ 체육시설법

의원명(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조계원 (민/문체) 2204600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 금지 및 벌칙강화	‘24.10.8.